

대학원학칙 SW·AI융합대학원 시행세칙

2004.3.1 제정
 2006.3.1 개정
 2009.9.1 개정
 2016.3.1. 일부개정
 2017.9.1. 일부개정
 2018.3.1. 일부개정
 2019.3.1. 일부개정
 2020.3.1. 일부개정
 2021.3.1. 일부개정
 2024.3.1. 일부개정
 <SW·AI융합대학원 행정실>

제 7 장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 2 절 학위청구

제 19조 (학위청구 자격) ① 세칙 제14조 1항 1호의 학점을 이수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논문 중간발표를 한 자
 5. 대학원에서 지정한 주요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이 결정된 자
- ② 세칙 제14조 1항 2호의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0조 (주요학회) 본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주요학회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1조 (학위청구 논문 제출의 연한 및 특례)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제출은 2회에 한하며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등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다음부터는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특례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 특례대상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 위촉된 지도교수가 퇴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

재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